

[NDA 분쟁]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중 비밀유지의무에 관련 분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28665 판결



1. 전략적 제휴관계 – 기술개발담당과 마케팅 담당 회사의 협력 MOU 체결

원고 A사와 피고 B사는 2008. 11. 11. 모바일 콘텐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하였는데, 전체적 구도로는 A사는 기술개발, B사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협력구조입니다.

Mobile Contents 제작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양사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의 발전 및 이익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방안)

본 협약에 따라 양사의 공동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협력

- ①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을 '공동사업'의 협력 대상으로 인정한다.
- ②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지원, 정보제공에 노력하며,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 협력 분야

- ① 피고는 국내외 휴대단말제조사 및 이동 통신 사업자에 원고의 개발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담당한다.
- ② 원고는 '공동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정보제공 등의 협력을 한다.
- ③ 상기 조항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구체적인 계약으로 실행될 수 있다.

2. 본 계약 체결 및 분쟁 발생

양사는 2009. 6. 29. Drawing Message Service('DMS' 손으로 직접 쓰거나 그린 글자 및 그림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A사와 B사는 이동통신사 대상으로 DMS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A사는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B사는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서비스로 발생하는 매출의 30%는 A사에, 70%는 B사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투자, 업무분담,

수익분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담당 B사는 A사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KT에서 주최하는 신규 메시징 서비스 공모전에 응모, 2009. 10.경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양사는 2010. 6. 1. 스마트폰 확산으로 사업범위를 DMS에서 TMS(Total Message Service)로 확장하는 부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완료한 후 수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A사는 위와 같은 B사의 응모행위가 자신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협력사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

제1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 ① 원고와 피고는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개발 관련 정보, 제품정보, 영업정보 등) 또는 자료를 외부에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막론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상호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 관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법원 판결

법원은 A사에서 B사에 DMS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KT 신규 메시징 서비스 공모전에 피고 단독 명의로 당선되었다는 점 및 리얼톡과 올레톡 사이에 기능상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피고가 KT에서 주최하는 신규 메시징 서비스 공모전에 응모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MS에 관한 영업활동이므로 이 과정에서 원고의 DMS자료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금지하는 비밀유출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제공한 DMS 자료는 주로 '그림메시지 기능'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개발한 올레톡에는 해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3) KT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UI를 준비하였고, 피고는 KT에서 정해 놓은 기획, 디자인, 개발방법 등에 따라 코딩 용역을 수행한 것일 뿐인 점,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지 않은 점,

(5) 피고는 관련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점,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시사점

수많은 난관을 뚫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영업력 부족 때문에 협력사에 해당 기술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개발사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기술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많은 연구와 실무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단순한 조항만으로는 기술정보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효력의 한계로 비밀유지 조항을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특허출원 및 등록,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또는 영업비밀원본증명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론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할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인데도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고, 곧바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사사건의 결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형사 및 민사 사건 모두 관련 기술분야에 능통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소송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 부정경쟁, 영업비밀, 손해배상, 형사고소, 민사소송,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